성주군보건소·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4. . .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상위법과 도사업소 명칭 및 관련 조례 등이 개정됨에 따라 성주군 보건소·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용조례를 개정하여 법령 상하간의 체제를 유지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도 조례명 변경(안 제3조)

- 경상북도보건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 ⇒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

나. 상위법령명 변경(안 제8조)

-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⇒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

3. 개정안 : 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
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

나. 예산조치 : 관계없음

다. 기 타 : 없음

성주군조례 제 호

성주군보건소·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성주군보건소·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중 "경상북도보건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"를 "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"로 한다.

제8조중 "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"을 "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 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(안)
제3조(기타수가)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"경상북도보건연구소설치및운영조례"에 규정한 "검사, 시험 등 수수료"를 준용한다	제3조(기타수가) ----------"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"----------
제8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(이하"법"이라 한다)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	제8조(목적) ------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----------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